

목포시 공고 제2026-577호

##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6. 4. 9.

목 포 시 장

1. 신청기간 : 2026. 1. 14. ~ 이차보전금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 지원 제외 및 중지 대상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대상 업종) 해당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이 4회 이상 보유사실이 있는 사람
- 사업장 및 거주 주택에 (가)압류 등의 처분 사실이 있는 사람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대출 신청업체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업체
- 사업장을 목포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폐업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중인 업체는 제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 3.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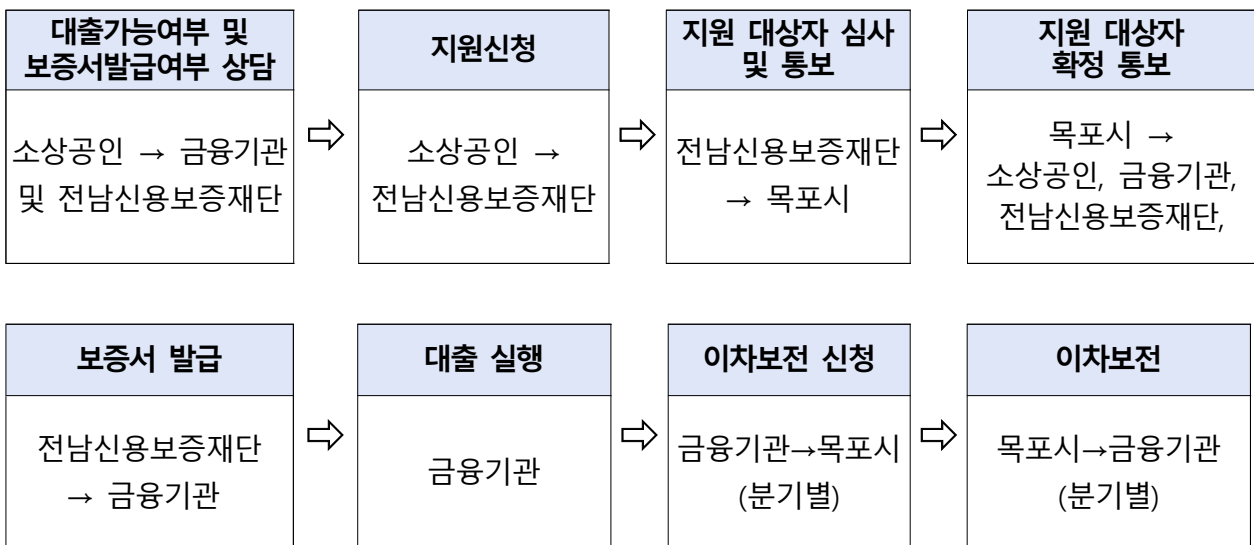
- 용자추천 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용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 4. 용자신청 · 접수

- 접수기간 :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 보증서발급여부 및 구비서류 문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

※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바람

#### ○ 신청절차



### 5. 대출취급 기한

- 용자추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신청 가능함

6. 대출취급 기관(목포시 소재 본점 및 지점)

금융기관명	
KB국민은행 목포지점	목포농협 산정지점
KB국민은행 하당종합금융센터	목포농협 하당지점
우리은행 목포금융센터	목포농협 용당지점
KEB하나은행 목포금융센터지점	목포농협 북항지점
광주은행 목포지점	목포농협 용해지점
광주은행 하당지점	목포농협 신부흥지점
광주은행 용해지점	신한은행 목포지점
광주은행 목포시청지점	신한은행 목포하당금융센터
IBK기업은행 목포지점	목포중앙새마을금고
SC제일은행 목포지점	국민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목포신안시군지부	산정새마을금고
NH농협 신목포지점	삼학새마을금고
NH농협 목포금융센터	목포신협
NH농협 자유시장지점	꿀벌신협
NH농협 동명동지점	용해신협
목포농협본점	목포우리신협
목포농협 대성지점	북교신협
목포농협 해안지점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 불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 7. 기타 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등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 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목포시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061-270-8827),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으로 문의 바람

- 붙임 1.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 1부.  
2.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1부.  
3.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소상공인 지원자금 관련사항 변경신고서 1부. 끝.

[붙임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

표준산업 분류	업종
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	총포 도매업
46779중	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업
47919	기타 통신판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1	자동판매기 운영업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판매업
479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561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56120	기관 구내 식당업
56132	이동 음식업
5621	주점업 [단, 56219(기타 주점업) 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중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	도박 관련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612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 타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붙임 2-1]

사 업 계 획 서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세 부 사 업 별 소 요 자 금		
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	자 기 자 본	
	금 융 기 관	
	기 타	
용 자 금 상 환 계 획		
기 타		



